

新電氣事業法의 制定意義

昔成煥

〈韓電，法令整備擔當役〉

I. 新法制定의 必要性

1. 現行 電氣事業法의 成立과 그 背景

現行 電氣事業法은 1961年 12月 30日에 制定되었다. 그러나 그 沿革을 살펴보면 1930年代로 遊及된다.

韓國에 電氣事業이 始作된 것은 1887년 宮廷에 外國인이 電燈을 點燈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하나 여기에 對한 法規制는 日帝侵略이 있은 以後의 일이었다.

특히 1920年代에 이르러 内燃機關의 發達로 因하여 國內 各處에 電燈需要를 生起 對象으로 하는 小規模 配電事業이 建立하여 全國의 電氣事業者는, 1930年代에는 무려 50餘를 헤아리게 되었다.

따라서 日帝當局은 (1931年 本土에서 電氣事業法을 改正 施行함에 이어서) 1932年에 所謂 總督府 制令

으로서 「朝鮮電氣事業令」을 制定하여 이 땅에 비로소 本格的인 電氣事業 規制法規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後로 各種 法令이 나타났으나 이들은 解放과 더불어 撫散되고 말았다.

다만 美軍政法令 第21號 「法律, 諸命令의 存續에 關한 件」 및 南朝鮮 過渡政府行政命令인 「非常時 電力委員會 設置에 關한 件」에 依하여 日帝의 法令이 當分間 그대로 適用되었고 政府樹立後에는 獨立憲法 第100條에 依하여 이들이 合憲의 인實定法源으로 存續케 되었었다.

5.16即後 政府는 祖國의 近世 政治史에 있어서 風運의 所產이라 할 수 있는 이들 各種 外國法令들에 對한 大大的인 整備作業을 시도해遂行하는 가운데 現行 電氣事業法도 다른 幾百의 諸法令과 함께 1961. 12.30當時의 立法機關인 國家再建最高會議廳 通過하기에 이룬것이다.

다만 當時의 狀況으로서는 舊法令을 大體적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程度의 時間餘裕밖에 없었으므로

첫째, 그 몇 달前에 制定된 「韓電法」에 依하여 電力三社가 統合된 即後에서 多數 電氣事業者の 出現을豫期치 못한 關係로 國家調整關係條項을 事實上 모두 刪除하였고,

둘째, 電氣 技術에 關하여는 當時 隣近 外國에서 施行되던 制度를吸收하여 「電氣工作物 規程」을 制한 것 等을 除外하고는 事實上 舊朝鮮電氣事業令의 體制가 그대로 繼受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現行法의 立法趣旨는 1930年代 電氣事業 初創期에 電氣技術의 研究開發이 初步段階에 不過하여 電氣工作物의 規制方法等 複雑히 未備된 內容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2. 電氣事業法 全面改正의 必要性

지난 半世紀에 있어서의 技術의 發達은 어느 數世紀에 맞먹는 바 있다.

電氣事業分野에 있어서도 研究, 開發과 技術革新이 눈부신 바 있어

오늘날에는 電氣는 單純의 點燈의 手段이 아니라 모든 產業의 動力源인 同時に 一般市民生活의 必須品化되어 있어 現代 物質文明의 中樞의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더우기 1960年代 以後 產業活動이 活潑하게 됨에 따라 國民生活이 向上되고, 電力需要가 急激히 上昇되어 國內 發電設備가 400萬kw로 急增하였으며 그 동안 電氣事業者는 3個→1個→4個→3個로 되는 등 電氣事業界는 大き은 起伏을 겪었다. 한편 農漁村電化事業의 促進等으로 1977年頃에는 全國土가 完全電化地城으로 化하게 되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現行法을 그대로 適用하기에는 너무도 不備矛盾點이 많으므로 改正이 時急하였으나 部分改正만으로는 도저히 그 乖離를 베기기에 未及하기 때문에 此際에 新法制定으로서 電氣事業界에 一新을 期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累年の努力에도 不拘하고 作業이 推進되지 못하던中 지난 1月 30日 新法案이 非常國務會議를 通過하였로서 드디어 年來의 宿願이 풀린 셈이다. 이 新法은 施行에 必要한 附屬法令들이 制定되는대로 施行하게 되는데(施行日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同法附則 第1項) 以下 그 重要改正內容을 簡略히 記述한다.

II. 重要改正事項

1. 國家의 規制와 調整機能 強化

國家가 規制와 調整을 必要로 하는 事項은 모두 法律에 定하였다.

例를 들면 數個의 電氣事業者가 設立된結果 그들相互間의 供給秩序를 確立하는것(法第13條), 綜合

의인 電力需給計劃과 長期設備投資計劃을樹立하여 恒常 適正規模의 電力供給 設備가 確保되고 圓滑한 電力需給에 支障이 없도록 하고(法第24條), 電力不足時를 對備하여 國家外 直接 電氣使用者에 對하여 電力使用을 制限하고, 電氣事業者에게 電氣供給을 調節할 것을 規定하였다(法第21條), 그뿐만 아니라 非常災害 其他 緊急事態로 因하여 電力需給에 莫大한 支障이 招來된 경우에는 國家가 모든 電氣工作物 所有者에게 相互 協助하여 難局을 打開하도록 命令을 할 수 있도록 하고(法第25條), 高度의 公益事業인 電氣事業의健全한 運營을 促求하고 또 電氣行政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기 为하여 國家는 모든 電氣事業者를 監查할 수 있도록 하고, 必要한 報告書를 提出케 하였다(法第72條, 第73條)

2. 電力審議委員會 設置

電氣行政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하고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기 为하여 商工部에 電力審議委員會를 두어 新規電氣事業許可審議와 電力料金 水準에 關한 意見을 綜合하고(特定電氣事業者의 電力料金에 關하여는 審議機關으로 된다. 法第15條 第2項, 法第18條 第3項) 長期 電氣供給計劃 및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의 長期 投資計劃을 審議決定하는 機關으로 하였다(任務,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는 施行命令에 서 定한다)

3. 電氣事業의 合理的인 區分과 規制

電氣事業을 一般電氣事業과 特定電氣事業으로 單純화하고 從來 認定되었던 準用事業制度는廢止하였다.

(勿論 準用事業이란 用語가 使用되기는 하지만 後述하는 바와같이 全혀 그 概念이 다르다) 兩者的 差異는 供給相對方이 누구인가에 따라 區分되는 것으로서一般的인 需要에 應하는 事業을 一般電氣事業, 特定人(即 一般電氣事業者)에게만 電氣를 供給하는 事業을 特定電氣事業이라 指稱토록한 것이다.

4. 保安體制의 改編

電氣事業의 初創期에는 電氣工作物의 設置工事와 維持管理는 電氣事業者만의 權利였고 또 그로부터 發生되는 모든 災害에 對하여도 當然히 그 責任을 電氣事業者가 負擔하는體制였었다(現行電氣事業法第7條 第1項參照).

그以後 社會의in 與件은 많은 變遷이 있어 첫째 需要設備에 對하여는 각己 그 需用家가 設置하고 所有하게 되었으며, 또 法律上 電氣工作物의 設置等의 工事を 할 수 있는者도 電氣事業者 외에 세로운 業種인 電氣工事業者가 追加되었다(電氣事業法 法律第280號參照).

한편 需用家의 設備規模도 점차大型化되고 電氣技術이 普及되어서 이제는 電氣設備의 保安을 爲する 그 工作物의 設置等 工事權을 어느 特定人에게만 局限하거나 또는 工事權의 反射的인 法律關係로서 災害의 責任을 어느 特定人에게만 局限하여 負擔케 해야 될 必要性이 自動的으로 消滅되어 버렸다.

따라서 모든 電氣工作物의 保安에 關한 權利와 責任은 각己 그 所有者의 私權과一致 시켰으며 여기에 國家는 여러가지 세로운 制度로서 加一層의 強力한 規制를 計하므로서 보다 效果的으로 保安이 確保되도록 體制를 改編하였다. (詳 細

한 내용은 다음機會에 따로記述하기로 한다)

5. 規制對象의 明確한 區分

認許可事項等 規制對象을 明確히 区分하여 附屬法令에 그 具體의 인事實을 明示하도록 하였다.

6. 山間僻地, 島嶼等地에서의 電氣事業

相當期間 一般電氣事業者의 電力系統이 들어갈 수 없는 閉鎖地域에서 小規模의 設備로써 電氣事業을 營為하는것을 抑制할 必要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認定하고 다만 電氣事業法을 全面적으로 適用하는 경우에는 차나치게 條款하기 때문에 電氣事業法의 規定中 必要 不可

缺의 몇 가지 事項만을 準用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그 事業을 準用事業이라呼稱토록 하였으나 現行法上의 準用事業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다는것은 (1)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7. 罰則強化

法規定中 義務規定에 對하여는 모두 그 違反에 對한 制裁를 課하기 為하여 罰則을 詳細히 規定하였다. 더우기 電線窃取를 비롯한 發送變配電用 電氣工作物의 損壞行為에 對하여는 보다 무거운 處罰을 課하고, 無斷히 電氣設備를 操作하여 妨害하거나 그 反對로 當然히 操作하여야 되는 從業員이 故意로 正當한 操作을 忌避하여 發送變

配電이 妨害된 경우에도 相當히 嚴한 處罰을 課하도록 한 것이다.

8. 電氣用品 製造 規制는 別途의 法制定

從來 電氣事業法에 規定되어 있던 電氣用品 製造 規制 條項을 없애고 別途의 法을 制定토록 하였다. 다만 그 法이 制定될 때 까지는 現行法 第16條와 그 條項에 基하여 制定된 大統領令(電氣用品 製造 免許等에 關한件, 1966.1.13 大統領令 第2378號) 및 商工部令(電氣用品 製造 免許等에 關한件 施行規則 1966.9.30 商工部令 第171號) 現行法의 取止에도 不拘하고 繼續하여 効力を 갖도록 하였다(附則參照).

<P. 22에서계속>

의 低電壓補償工事を 실시하였으며 電力損失率은 11%로 감소되었고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131%가 향상되었다고 보고 했다.

한편 이날의 총회는 維新總會답게 전례없이 질서정연하고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는데 총회의 목적사항인 ① 72년도 영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증인의 전 ② 아익금 처분안 증인의 전 ③ 경관 변경의 전 ④ 자산재평가 보고 및 자본전입의 전 ⑤ 임원보수의 전 ⑥ 임원선임의 전을 각각 원안대로 증인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폐회에 앞서 民間株主 일동이 金相福韓電社

長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지난 한 해동안 韓電이 이룩한 경영워신 실적을 높이 致賀했으며 10월 유신의 충고한 精神에 입각하여 韩電의 民間株主一同도 유신대열의 선봉에 설것을 굳게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하여 이색적이 화제를 낳았다.